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40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안도결 · 이재강 · 정준호
양부남 · 허성무 · 박홍배
서미화 · 김우영 · 안호영
민병덕 · 이용선 · 윤준병
북기왕 · 오기형 의원
(14인)

제안이유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유망한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시장에 중복으로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하여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회사의 상장 결정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

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나. 종속회사등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5조의22 신설).

다.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 배정 또는 할인 배정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3 신설).

라. 모회사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4 신설).

마.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5조의25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3장의2에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1(중복상장의 요건)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액이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2. 주권상장법인과 그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65조의22(중복상장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①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65조의21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종속회사: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2. 계열회사: 계열회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모회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종속회사등의 상장 추진 목적 및 필요성

2. 종속회사등의 사업 개요 및 재무 상황

3. 종속회사등의 상장이 모회사의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제165조의23에 따른 주주 보상 조치의 구체적 내용

5. 모회사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관점 찬반 입장

제165조의23(주주 보상 조치) ① 종속회사등이 제165조의21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속회사등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모집하려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하여 배정하는 것

2. 해당 종속회사등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모집하려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할인 배정하는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보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배정방법 및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24(중복상장 관련 공시의무) ① 모회사는 종속회사등이 제 165조의21에 따른 상장을 추진하려는 경우 모회사 또는 종속회사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25(위반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165조의21부터 제 165조의2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정정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5조의21(중복상장의 요건)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u> <u>1.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액이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u> <u>2. 주권상장법인과 그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u>
<u><신 설></u>	<u>제165조의22(중복상장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① 종속회</u>

사 또는 계열회사(이하 “종속 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65조의21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종속회사: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2. 계열회사: 계열회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모회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종속회사등의 상장 추진 목적 및 필요성

2. 종속회사등의 사업 개요 및 재무 상황

3. 종속회사등의 상장이 모회사의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제165조의23에 따른 주주 보

<신 설>

<신 설>

상 조치의 구체적 내용

5.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의
무 관점 찬반 입장

제165조의23(주주 보상 조치) ①

종속회사등이 제165조의21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려는 경우
에는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시행하여
야 한다.

1. 해당 종속회사등이 증권시장
에 상장하여 모집하려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
회사 주주에게 우선하여 배정
하는 것

2. 해당 종속회사등이 증권시장
에 상장하여 모집하려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
회사 주주에게 할인 배정하는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주 보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배정
방법 및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24(중복상장 관련 공시

<신 설>

의무) ① 모회사는 종속회사등이 제165조의21에 따른 상장을 추진하려는 경우 모회사 또는 종속회사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25(위반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정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